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2024. 제 1 차 이사회의록)

1. 회의 통지일 : 2024년 1월 24일
2. 회의 일시 : 2024년 1월 31일 (10:00~11:00)
3. 회의 장소 : 본 회의실
4. 재적이사정수 : 5명
5. 참석이사 : 5명(한지영, 한보부, 이민숙, 서순원, 이경희)
6. 불참이사 : 없음
7. 개회 정족수 ; 재적 이사의 3분의 2
8. 의결 정족수 : 참석 이사의 3분의 2
9. 안 건 : 1) 서울 샛별, 부산 성모(유치원) 2023학년도 제3, 4차 추경 예산(안) 승인 건
2) 서울 샛별, 부산 성모(유치원) 2024학년도 본예산(안) 승인 건
3) 서울 샛별, 부산 성모(유치원) 교원, 원감 임용(안) 승인 건
4) 서울 샛별, 부산 성모(유치원) 유치원 규칙 개정(안) 승인 건

10. 회의 내용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 한지영 대표이사가 의장석에 임하여 임원의 성원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2) 의장 인사
• 의장 한지영 : 오늘 이사회의는 법인 산하 유치원 2023학년도 3, 4차 추경 예산(안)과 2024학년도 본예산(안), 교원, 원감 임용(안), 유치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안건으로 개최하겠습니다.
- 3) 전차 회의록 낭독
전차 회의록을 요약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묻은 결과 이사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키로 선포하다.
- 4) 안건 심의
• 의장 한지영 : 이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 안건. 서울 샛별, 부산 성모(유치원) 2023학년도 제3, 4차 추경 예산(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2023학년도 제3, 4차 추경 예산(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서순원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2023학년도 3,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이사 서순원: 각 유치원 추경 예산 내용은 붙임의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치원별 2023학년도 3차 추경(안) (단위 : 천원)

유치원명	2023학년도 2차 추경	2023학년도 3차 추경	증감	추경 사유
서울 셋별유치원	1,726,922	1,783,309	▲56,387	· 2023학년도 보조금 및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금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정리 추경임

■ 유치원별 2023학년도 4차 추경(안) (단위 : 천원)

유치원명	2023학년도 3차 추경	2023학년도 4차 추경	증감	추경 사유
부산 성모유치원	761,355	745,942	▼15,413	· 2023학년도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정리 추경으로 교직원 중간 입사로 인한 인건비 증액 · 재월한 월아의 수가 예산상 책정한 월아 수보다 적어 보조금, 수익자부담금 세입 감액

- 이사 한보부 : 2023학년도 결산 전 추경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이민숙,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전원, 이사 이민숙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2023학년도 3, 4차 추경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2 안건. 서울 셋별, 부산 성모(유치원) 2024학년도 본예산(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2024년 본예산(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서순원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사 서순원 : 본예산 내용은 월아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 감액, 교직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액과 유치원 보수공사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붙임의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유치원명	2023학년 본예산	2024학년 본예산	증감	증감 사유
서울 셋별유치원	1,509,228	1,054,261	▼454,967	·학급 축소 및 월아 감소로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부산 성모유치원	722,706	668,821	▼53,885	·월아수 감소 및 교육청 지원금 감소로 인한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

- 이사 이민숙 : 유치원 실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이경희,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전원, 이사 이경희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2024학년도 본예산(안)을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3 안건. 서울 셋별, 부산 성모(유치원) 교원, 원감 임용(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교원, 원감 임용(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서순원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사 서순원 : 붙임의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원 임용(안)

유치원명	이름	직위	임용일
부산 성모유치원	백미소	교사	2024년 2월 1일

■ 원감 임용(안)

유치원명	이름	직위	임용 사유	임용일
서울 셋별유치원	정보나	원감	現 유치원에서 원감자격 취득 후 담임교사로 재 직 중이며, 원감 임용 후 담임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교육청 지도에 따라 임용하게 됨	2024년 2월 1일

- 이사 이민숙 : 두 유치원 모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이경희,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전원, 이사 이경희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교원, 원감 임용(안)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제4 안건. 서울 셋별, 부산 성모(유치원) 유치원 규칙 개정(안) 승인 심의>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유치원 규칙 개정(안) 승인을 심의 상정하고 서순원 이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사 서순원 : 붙임의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 셋별유치원 규칙 개정(안)

개정 사유	2023년 12월 31일에 시행된 「사립학교법」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제5장 수업 일수 및수업운영 방법 제12조의 2(생활지도 기준) ①유치원 생활지도 기준은「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라 신설하여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



셋별유치원 규칙 신·구 대조표

<기준일 : 2023.12.31. 셋별유치원>

구분	원행(구)	개정(신)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신설>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12조의 2(생활지도 기준)</p> <p>①유치원 생활지도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따른다.</p> <p>② 유치원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p> <p>[분리보관가능한물품]</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30%;">요건</th> <th style="width: 15%;">분리기간</th> <th style="width: 20%;">분리장소</th> <th style="width: 35%;">분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칼, 기위, 승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7일</td> <td></td>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유아로부터 물품을 받아 유치원의 장에게 신고 ※ 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td> </tr> <tr> <td>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7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td> </tr> <tr> <td>3 기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시)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교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7일 또는 교육과정 시간</td> <td></td> </tr> </tbody> </table>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칼, 기위, 승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유아로부터 물품을 받아 유치원의 장에게 신고 ※ 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	7일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3 기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시)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교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	7일 또는 교육과정 시간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칼, 기위, 승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유아로부터 물품을 받아 유치원의 장에게 신고 ※ 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	7일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3 기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시)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교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	7일 또는 교육과정 시간															

■ 부산 성모유치원 규칙 개정(안)

개정 사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4조제10호(생활지도의 범위 중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제5항(훈육의 방법 중 물품 분리보관), 제13조(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일부 개정 사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유치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지침」,「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의 일부 개정(교육부고시 제2023-4호), 사람유치원의 사학기관 행동강령 관련 「사립학교법」(2022.03.25 시행)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

성모유치원 규칙 신·구 대조표

구분	규칙(신)	규칙(구)
제2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p>제6조(휴업일 등) ①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2. 개원기념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4. 재량휴업일(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정한 날) ②제1항 제1호의 휴업일에 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휴업일 등) ①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국경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2. 개원기념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4.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일 5. 재량휴업일(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정한 날) ②제1항 제3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구분	규칙(신)	규칙(구)
<p>제5장 수업일수.수업 운영방법</p>	<p>제12조(교외체험학습)</p> <p>① 보호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견학)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유치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체험학습의 기간은 연간 30일(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체험학습의 기간에서 제외)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p> <p>② 체험학습 시에는 유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보호자는 5일마다 유치원에 유아의 안전을 알린다(신청서에 관련 내용 명시).</p> <p>※ 연락이 없을 시, 유치원은 유아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③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 시작 3일 전까지) ※ 단, 유치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원장 심사 후 허가 및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 후 10일 이내, 휴일 포함) ※ 단, 유치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p>제12조(교외체험학습)</p> <p>①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와 통보를 받고 실시하며 연간 30일(휴일, 미포함)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1/3까지 허용)</p> <p>② 다음의 절차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 3일 전까지) 2. 원장 심사 후 허가 및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p>(체험학습 시에는 유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 또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보호자는 5일마다 유치원에 유아의 안전을 알린다.)</p>

구분	규칙(신)	규칙(구)
<p>제5장 수업일수.수업 운영방법</p>	<p>④ 다음의 경우는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험학습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2. 유치원장으로부터 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규칙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6. 기타 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p>③ 다음의 경우는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험학습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2. 유치원장으로부터 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규칙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6. 기타 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p>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출 및 전입학.휴학 및 복학.사퇴 및 퇴학.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관리.수로 및 졸업</p>	<p>제13조(입학)</p> <p>①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하되 당해 연도 유아모집 계획에 의하여 정한다.</p> <p>②본원의 입학 시기는 3월로 하되, 입학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수시로 입학을 결정한다.</p> <p>③본원의 유아모집은 당해 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유아모집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한다.</p> <p>제14조(재입학)</p> <p>본 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 원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p> <p>제15조(편입학)</p> <p>타 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에 들어오기를 원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할 수 있다.</p>	<p>제13조(입학)</p> <p>①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하되 당해 연도 원아모집 계획에 의하여 정한다.</p> <p>②본원의 입학 시기는 3월로 하되, 입학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수시로 입학을 결정한다.</p> <p>③본원에 입학을 원하는 유아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입학자를 선정한다.</p> <p>제14조(재입학)</p> <p>본원에 입학하였다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였다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p> <p>제15조(편입학)</p> <p>편입을 원할 경우, 편입학원서를 제출하여 편입학할 수 있다.</p>

구분	규칙(신)	규칙(구)
<p>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출 및 전입학·휴학 및 복학·저퇴 및 퇴학·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관리·수료 및 졸업</p>	<p>제16조(전출 및 전입학) ① 본 원 유아가 타 원으로 학적을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출할 수 있다. ② 타 원 유아가 본 원으로 학적을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입학할 수 있다.</p> <p>제17조(휴학 및 복학) ① 유아가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서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②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유치원으로 복학할 수 있다.</p> <p>제18조(저퇴 및 퇴학) ①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 유치원에서의 학적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저퇴를 할 수 있다. ②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p> <p>제19조(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관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제 처리 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여 유예 처리할 수 있으며, '정원의학적관리' 할 수 있다. ③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의학적관리' 중인 자가 다시 본 원으로 들어오거나 할 경우 재취학 처리 할 수 있다.</p> <p>제20조(수료 및 졸업)</p>	<p>제16조(전학) 유아가 이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학을 원할 경우, 전학을 할 수 있다.</p> <p>제17조(휴학) 유아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서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p> <p>제18조(퇴학) 유아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p> <p><신설></p> <p>제19조(수료 및 졸업)</p>

구분	규칙(신)	규칙(구)
제7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p>제21조(생활지도 범위)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습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 유치원 시설 이용, 타인의 소유물 존중, 소지 물품 등</p> <p>제22조(훈육)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 가위,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번지 등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 3. 기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 (고가의 장난감, 현금, 교사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소리나는 장난감 및 물품, 휴대폰 등) <p>제23조(기타) 이 규칙 외의 기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구분	규칙(신)	규칙(구)
제8장 장애우아 인권보호	제24조(차별 방지 않을 권리)	제20조(차별 방지 않을 권리)
	제25조(교육에 관한 권리)	제21조(교육에 관한 권리)
	제26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제22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제2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3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8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제24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제29조(무상교육)	제25조(무상교육)
	제30조(학부모 부담 경비)	제26조(학부모 부담 경비)
제9장 수업료, 임학금 및 그 밖의 비용 징수	제31조(회계연도)	제27조(회계연도)
	제32조(유치원재정운영의 공개)	제28조(유치원재정운영의 공개)
	제33조(사무직원)	제29조(사무직원)
제10장 교직원	제34조(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제30조(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제35조(행동강령) 본원 원장과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제11장 유치원운영 위원회 조직·운영	제36조(유치원운영위원회)	제31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분	규칙(신)	규칙(구)
제12장 규칙 개정 절차	제37조(규칙개정)	제32조(규칙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치원 규칙 은 2023. 12. 3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유치원 규칙 은 2022. 10. 01.부터 시행한다.

• 이사 한보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개정이나 유치원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사 이경희, 원안의 승인을 동의하다.

이사 전원, 이사 이경희의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법인 산하 유치원의 유치원 규칙 개정(안) 승인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5) 폐회

• 의장 한지영 : 2024년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적 모성의 실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안건이 없으면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서순원, 이사회 폐회를 동의하다.

이사 이경희, 서순원 이사의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 전원 폐회를 찬성하다.

의장 한지영, 2024년 제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의안 번호	안 건 명	표결 수				심의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제1안	서울 셋별, 부산 성모(유치원) 2023학년도 제3, 4차 추경 예산(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2안	서울 셋별, 부산 성모(유치원) 2024학년도 본예산(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3안	서울 셋별, 부산 성모(유치원) 교원, 원감 임용(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제4안	서울 셋별, 부산 성모(유치원) 유치원 규칙 개정(안) 승인 건	5				원안 가결

2024년 1월 31일

재단법인 성모성심



대표이사 한 지 영



이사 한 보 부



이사 이 민 숙



이사 서 순 원



이사 이 경 희

